

◎ 法律 第4257號
環境政策基本法

製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법은 環境保全에 관한 國民의 權利·義務와 國家의 責務를 명확히 하고 環境保全施策의 基本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環境汚染으로 인한 危害를 豫防하고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적정하게 管理·보전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基本理念) 環境의 質的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快適한 環境의 造成 및 이를 통한 인간과 環境間의 調和와 均衡의 유지는 國民의 건강과 文化的인 生活의 享有 및 國土의 보전과 항구적인 國家發展에 必須不可缺한 要素임에 비추어 國家·地方自治團體·事業者 및 國民은 環境을 보다 良好한 상태로 유지·造成하도록 노력하고, 環境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環境保全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國民으로 하여금 그 惠澤을 널리 享有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世代에게 繼承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基本理念으로 한다.

第3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環境”이라 함은 自然環境과 生活環境을 말한다.
2. “自然環境”이라 함은 地下·地表(海洋을 포함한다) 및 地上의 모든 生物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非生物的인 것을 포함한 自然의 상태를 말한다.
3. “生活環境”이라 함은 大氣, 물, 廢棄物, 騒音, 振動, 惡臭등 사람의 日常生活과 관계되는 環境을 말한다.

4. “環境汚染”이라 함은 事業活動 기타 사람의 活動에 따라 발생하는 大氣汚染, 水質汚染, 土壤汚染, 海洋汚染, 放射線汚染, 騒音·振動, 惡臭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環境에 被害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環境保全”이라 함은 環境汚染으로부터 環境을 보호하고 汚染된 環境을 개선함과 동시에 快適한 環境의 상태를 유지·造成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第4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 國家는 環境汚染과 그 危害를 豫防하고 環境을 적정하게 管理·보전하기 위하여 環境保全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

② 地方自治團體는 管轄區域의 地域的 特性을 고려하여 國家의 環境保全計劃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

第5條(事業者의 責務) 事業者는 그 事業活動으로 부터 惹起되는 環境汚染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施策에 참여하고 協力하여야 할 責務를 진다.

第6條(國民의 權利와 義務) 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施策에 協力하고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7條(汚染原因者의 費用負擔責任) 자기의 행위 또는 事業活動으로 인하여 環境汚染의 원인을 惹起한 者는 그 汚染의 방지와 汚染된 環境의 회복 및 被害救濟에 소요되는 費

用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第8條(보고) ① 政府는 매년 主要 環境保全施策의 推進狀況에 관한 보고서를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年度의 環境保全施策 추진 狀況
2. 다음 年度의 主要環境保全施策의 내용
3. 기타 環境保全에 관한 주요 사항

③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9條(放射性 物質에 의한 環境汚染의 방지 등) ① 政府는 放射性 物質에 의한 環境汚染 및 그 방지등에 관하여 적절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原子力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2章 環境保全 計劃樹立等

第1節 環境基準

第10條(環境基準의 設定) ① 政府는 國民의 건강을 보호하고 快適한 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環境基準을 設定하여야 하며 環境與件의 變化에 따라 그 適正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地域環境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별도의 環境基準을 設定할 수 있다.

第11條(環境基準의 유지) 國家 및 地方自治

團體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環境에 관련되는 法令의 制定과 行政計劃의 수립 및 事業의 執行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環境惡化의 豫防 및 그 要因의 제거
2. 環境汚染地域의 原狀回復
3. 새로운 科學技術의 사용으로 인한 環境危害의 豫防
4.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財源의 適正配分

第2節 基本的 施策

第12條(環境保全長期綜合計劃의 수립) ① 環境處長官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政府의 環境保全을 위한 長期綜合計劃(이하 “長期計劃”이라 한다)을 每10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長期計劃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확정한다.

第13條(長期計劃의 내용)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人口·産業·經濟·土地 및 海洋의 이용 등 環境變化 與件에 관한 사항
2. 環境汚染度 및 汚染物質 排出量의 豫測과 環境汚染이 生態系에 미치는 영향 등 環境質의 變化展望
3. 自然環境의 現況 및 展望
4. 環境保全 目標의 設定과 이의 達成을 위한 段階別 對策 및 事業計劃
5. 事業의 施行에 소요되는 費用의 算定 및 財源 調達方法

第14條(長期計劃의 施行) ① 環境處長官은 第1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長期計劃을 지체없이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長期計劃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15條(環境汚染의 調査) ① 政府는 環境汚染狀況을 常時 調査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第1項의 調査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環境汚染의 監視·測定體制를 유지하여야 한다.

第16條(環境保全知識 및 情報의 普及) ① 政府는 環境保全에 관한 知識 및 情報를 普及하고 國民의 環境保全 意識을 鼓吹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未來世代를 위하여 環境을 적정하게 管理·보전하기 위하여 國民의 環境教育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17條(國際協力) 政府는 國際協力を 통하여 環境情報 및 技術을 交流하고 專門人力을 養成하며, 環境保全을 위한 國際的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第18條(環境科學技術의 振興) 政府는 環境保全을 위한 實驗·調査·研究·技術開發 및 專門人力의 養成등 環境科學技術의 振興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19條(環境汚染防止施設의 設置·管理) 政府는 大氣汚染의 低減을 위한 綠地帶, 廢·下水 및 廢棄物의 처리를 위한 施設, 騒音·振動 및 惡臭의 방지를 위한 施設 기타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公共施設의 設置·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20條(排出規制) 政府는 環境保全을 위하여 大氣汚染·水質汚染·土壤汚染 또는 海洋汚染의 원인이 되는 物質의 排出, 騒音, 振動, 惡臭의 발생 및 廢棄物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規制를 하여야 한다.

第21條(有害化學物質의 管理) 政府는 化學物質에 의한 環境汚染과 건강상의 危害를 豫

防하기 위하여 有害化學物質을 적정하게 管理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22條(特別綜合對策의 수립) ① 環境處長官은 環境의 汚染 또는 自然生態系의 變化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地域을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와 協議하여 環境保全을 위한 特別對策地域으로 지정·告示하고 당해 地域안의 環境保全을 위한 特別綜合對策을 수립하여 關할 市·道知事에게 이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내의 環境改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域내의 土地利用과 施設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第23條(影響圈別 環境管理) 環境處長官은 環境汚染의 狀況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氣汚染의 影響圈別地域 및 水質汚染의 水系別地域등에 대한 環境의 影響圈別管理를 하여야 한다.

第3節 自然環境의 보전

第24條(自然環境의 보전) 國家와 國民은 自然環境과 生態系의 보전이 人間의 生存 및 생활의 基本임에 비추어 自然의 秩序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5條(自然環境保全의 基本原則) 自然環境은 다음의 基本原則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自然環境은 원래의 形態로 보전되어야 하며, 自然의 이용과 開發은 調和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自然環境은 汚染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汚染되거나 훼손된 自然環境은 원래의 形態로 회복되어야 한다.

3. 野生動·植物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種族은 보존 되어야 한다.

第4節 環境影響評價

第26條(環境影響評價書의 작성등) ① 都市의 開發, 産業立地 및 工業團地의 造成, 에너지 開發, 港灣建設, 道路建設, 水質源開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環境保全에 영향을 미치는 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이하 이節에서 “事業者”라 한다)는 事業計劃案과 그 事業이 環境에 미치게 될 影響의 豫測 및 評價에 관한 書類(이하 “環境影響評價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環境處長官에게 協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事業者는 당해 事業施行으로 인하여 影響을 받게 되는 住民의 의견을 收斂하여 이를 環境影響評價書의 內容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事業者는 環境影響評價書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環境影響評價書의 실시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公立研究機關, 政府出捐研究機關등 環境影響評價能力이 있다고 環境處長官이 지정·告示하는 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④ 環境影響評價의 범위·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7條(環境影響評價書의 檢討) ① 環境處長官은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環境影響評價書를 檢討한 후, 그 事業이 環境保全에 地장을 招來할 危險이 있어 事業計劃의 調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事業者 또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事業計劃의 調整 및 補完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環境處長官은 環境影響評價書를 檢討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業者에 대하여 關係 資料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處長官의 요청을 받은 者는 이에 상응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28條(環境影響評價의 事後管理) ① 環境處長官은 第26條 第1項 또는 第2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評價書에 대한 協議內容의 이행여부를 調査·확인하여야 한다.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확인결과 事業者가 環境影響評價書에 대한 協議內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關係 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節 紛爭調整 및 被害救濟

第29條(紛爭調整) 政府는 環境汚染으로 인한 紛爭이 발생한 경우에 그 紛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解決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30條(被害救濟) 政府는 環境汚染으로 인한 被害를 원활히 救濟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31條(環境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① 事業場등에서 발생하는 環境汚染으로 인하여 被害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事業者에게 그 被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② 事業場등이 2個 以上 있는 경우에 어느 事業場등에 의하여 第1項의 被害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事業者는 連帶하여 賠償하여야 한다.

第3章 法制 및 財政上的 措置

第32條(法制上的 措置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을 위한 施策의 실시에 필요한 法制上·財政上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33條(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財政支援) 國家는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事業에 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서 지원할 수 있다.

第34條(事業者에 대한 財政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事業者가 행하는 環境保全을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稅制上의 措置 기타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第35條(調査·研究 및 技術開發에 대한 財政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에 관련되는 學術調査·研究 및 技術開發에 필요한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第4章 環境保全委員會, 環境保全諮問委員會, 環境保全協會

第36條(環境保全委員會) ①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計劃 및 環境保存에 관한 政府의 主要施策등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環境保全委員會를 둔다.

② 環境保全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7條(環境保全諮問委員會) ① 環境保全에 관한 技術的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環境處長官所屬下에 中央環境保全諮問委員會를 市·道知事所屬下에 地方環境保全諮問委員會를 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諮問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8條(環境保全協會) ① 環境保全에 관한 調査研究, 技術開發 및 教育·弘報등을 하기 위하여 環境保全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環境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施設의 設置許可를 받은

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會의 事業에 소요되는 經費는 會費·事業收入金 등으로 充당하며, 國家는 소요 經費의 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環境處長官은 協會의 운영이 法에 위반되거나 기타 定款에 違背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定款 또는 事業計劃의 變更이나 任員의 改任을 命할 수 있다.

⑥ 協會에 관하여 이 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5章 補 則

第39條(環境監視員) ① 環境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施設등에 대한 監視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環境處와 서울 特別市·直轄市 및 道에 環境監視員을 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監視員의 任免, 職務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0條(環境技術監理團) ① 環境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施設 및 그 汚染物質의 처리를 위한 施設의 設置에 대한 技術檢討를 하기 위하여 環境處長官所屬下에 環境技術監理團을 둔다.

② 環境技術監理團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1條(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 이 법에 의한 環境處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 環境處長官은 이 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係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

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廢止法律) 環境保全法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環境保全法 第9條, 第9條의 2, 第69條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自然環境保全에 관한 사항 및 環境保全法 第43條 내지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費用負擔에 관한 사항은 계속 그 效力을 가진다.

第3條(環境影響評價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5條, 第5條의 2 또는 第5條의 3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環境影響評價에 관한 書類의 작성 및 協議, 環境影響評價書의 檢討 및 의견 제시, 環境影響評價代行者의 지정은 第26條 또는 第2條의 規定에 의한 것으로 본다.

第4條(特別對策地域 지정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7條 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特別對策地域의 지정과 特別綜合對策의 수립·施行 및 그에 따른 土地利用과 施設設置 제한은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것으로 본다.

第5條(環境保全協會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協會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協會로 본다.

第6條(環境技術監理團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의 4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監理團은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監理團으로 본다.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環境管理工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理事는 理事長의 추천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이 任命한다.

第8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같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環境政策基本法 制定理由

現行 環境保全法이 大氣, 水質, 騒音·振動 등 異質的인 분야를 함께 規定하고 있어 날로 多樣化, 複雜化해가는 環境問題에 效果의 對處하기 곤란한 實情이므로 이를 각 個別 單行法으로 分離함과 동시에 憲法에 명시된 國民의 環境權을 實質的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國家環境保全施策의 基本理念과 方向을 제시하고 環境關係 法律相互間的 合理的 體系를 整립하여 環境保全施策이 國家全體로서 유기적 연관하에 一貫性있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1. 環境汚染의 原因을 發生하게 한 者는 汚染된 環境의 회복과 被害救濟등에 소요되는 費用을 부담할 責任이 있음을 規定함.
2. 政府는 매년 主要 環境保全施策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國會에 제출하도록 함.
3. 環境汚染이 현저한 地域을 特別對策地域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環境의 影響圈別로 環境汚染상태를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影響圈別 環境管理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
4. 環境保全에 영향을 미치는 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影響評價書를 작성하여 環境處長官과 協議하도록 하고, 그 評價書의 작성시에 는 반드시 住民의 의견을 收斂하도록 함.
5. 環境關係紛爭의 신속한 調整과 被害의 적정한 救濟를 위하여 政府가 필요한 制度를 수립하도록 規定하고, 環境汚染으로 인한 被害에 대한 事業者의 無過失責任을 規定함.

(법제처 제공)